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원 철원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1. 관련 : 강원도 동물방역과-21410('22.11.9.)호.
2. 우리부는 '22.11.9일(수) 강원 철원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본소)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부처 협조사항 및 관계기관(단체)별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단체)에서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발생농장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2096 소재 돼지 농장(농장주 : 이○옥)

### 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단계(심각) 지속 유지 및 방역조치(협조) 사항

※ 가축질병위기단계는 '19.9.17일부터 현재까지 심각단계 유지 중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 상의 ASF "심각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

### 다. 강원, 경기(인천 포함)

- ASF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철저
- 발생농장, 방역대 내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발생농장 및 방역지역별 주요 거점소독시설 운영
  -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세척·소독 후 소독필증을 받아 이동
-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 실시 및 이동제한
  - 발생농장 가축 살처분, 소각 등 현장 방역 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약품 등 조달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이동 금지, 농장주 및 종사자에 대한 출입통제
- 발생농장 동거축 시료채취
  - 검사두수 및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와 협의하고 시료채취시 방역본부 협조
- 방역대 농장 및 철원 소재 양돈농가 정밀검사, 경기 북부 및 강원 북부 양돈농가 임상예찰 실시(~ 11.11)
  - (경기 북부) 김포,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 강화, 옹진
  - (강원 북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방역대 농장 및 강원 철원 소재 양돈농가는 정밀검사(~11.11), 이후 주 1회 임상검사

경기 권역 돼지·분뇨 권역 밖 반출입 금지(이동통제 조치)

- 다만,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가의 경우 적용 제외
  - (권역 밖 도축장 출하) 권역 외 이동 관련 임상·정밀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출하 가능
  - (농장간 이동) 권역 밖의 농장 중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장과의 돼지 이동이 가능하며, 돼지 반출 시 권역 외 이동 관련 임상·정밀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 가능

라. 전국 지자체(공통 방역조치)

ASF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지속)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지속)

- 농장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

발생농장 출입차량·사람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양돈농장 이동제한,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 실시

- 모돈의 10%(돈사별 10두가 넘는 경우 10두만 채혈), 돈사별 비육돈 10두 이상 채혈 검사
  -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 1차 채혈검사(~11.11), 이후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주 1회 임상검사(매주 목요일 15시까지 검사결과 제출)
  -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매주 목요일 15시까지 검사결과 제출)

역학 관련 도축장에 시도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 및 매일 소독 실시, 도축장 시설 내·외부 환경검사

- 발생농장 출하 돼지 등은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추적조사하여 폐기 조치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전국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 금지

관내 축산농가·도축장·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ASF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지역방송 및 마을방송 등 활용)

전국 모든 양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 도축장 출입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철저

축산농장 출입 시 가축·사람·차량 등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축산차량의 GPS 부착 및 운영여부 확인 등 점검 철저

관내 방역취약 농가(밀집단지농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소독 등 집중 방역 지도·점검 및 예찰 강화

- ASF 발생국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홍보 실시
- 일시이동중지 시행 등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

- 전국 모든 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 조치 이행 철저
- 도내 소재 양돈농장에 대해 전화예찰(주 2회) 실시

#### 마. 농림축산검역본부

- ASF 발생지역 특별방역팀 파견을 통한 방역관리 추진
  - 특별방역팀을 파견하여 이동제한 준수 여부, 소독시설 운영 실태, ASF 확산 방지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해 이행사항 점검·지도
- 중앙역학조사반을 통해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
  - 역학조사 결과 및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즉시 농식품부 보고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발생농장에 대한 초동방역팀 근무 철저
- 전국 양돈농가에 대해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하여 예찰활동 강화
  - 경기·인천·강원 및 역학 관련 양돈농장 전화예찰 매일 실시
- 발생농장 동거축 시료채취시 협조

#### 사. 관련단체(협회)

- ASF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철저(지속)
  -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해 내·외부 소독 및 출입차량 소독 철저
  - 회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ASF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토록 지도·교육 철저
    - 발생지역 모임(행사) 금지 및 전국 양돈농가 모임(행사) 자제 등 방역 준수 사항 홍보(SMS 등 활용)
- ※ 특히, 모두가 폐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토록 지도·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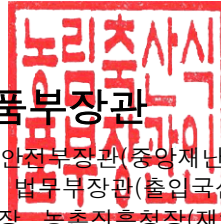
#### 아. 관련부처 협조사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동통제, 인력동원 등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지원
  -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철저
  - 발생지역 인근 매개체에 대한 예찰 철저

붙임 1. 심각단계 방역조치(SOP) 1부.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임상·정밀검사 요령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기획재정부장관(농림해양예산과장), 외교부장관(재외국민보호과장),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 관세청장(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해양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촌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지과장, 농업금융정책과장, 재해보험정책과장, 경영인력과장, 식량정책과장, 식량산업과장, 농업기반과장, 간척지농업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농업통상과장, 검역정책과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식품산업정책과장, 식품산업진흥과장, 외식산업진흥과장, 수출진흥과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 유통정책과장, 원예산업과장, 원예경영과장, 농산업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종자생명산업과장, 농기자재정책팀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구제역진단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해외전염병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한국중돈업경영인회,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기획재정부(농축산유통과장),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한국축육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주무관 김형욱 서기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 전결 2022. 11. 10. 유재형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7379 (2022. 11. 10.)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38 팩스번호 044-868-0628 / skao7@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